## 예 산 총 칙

##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4,864,086	16,345,923
일반회계		533,670,997	16,010,130
특별회계		11, 193, 089	335,793
	기타특별회계	11, 193, 089	335,7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9,700	9,891
	의료급여기금	364,312	10,9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10,009	3,300
	지하수관리	21,000	630
	기반시설	345,893	10,377
	주차장	10,022,175	300,665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9,589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5,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